공증
인가
法務法人 두 레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405호
(서초동,정곡빌딩 남관)
(전화) (02)-595-2233
(팩스) (02)-595-4466

[별지 제33호서식]

등부 2019년 제 1838 호

인 증 서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

이 사 회 의 사 록

2019년 6월 25일 17시 본 회사 회의실에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4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 3명, 출석 이사수 : 3명
감사총수 : 1명, 출석 감사수 : 0명

대표이사 김병국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한 심의를 구하다.

제 1 호 의안 : 2018년도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의장은 2018년도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2019년6월25일 18시에 본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2 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감사 정주호는 제8기 (2018.4.1.~2019.3.3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보고하였고, 의장은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사실상 확정 승인 가결하다.

제 3 호 의안 : 이익배당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실적과 형편에 따라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을 설명하고 무배당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의장은 당기의 이사의 수가 3인이며, 이들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사들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억원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의장은 당기의 감사의 수가 1인이며, 감사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1억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감사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6 호 의안 : 자본 감소의 건

의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당사가 영위중인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과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최저 자기자본 17.5억에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12.25억원이다고 등록요건의 적합성을 설명하였고, 자본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금 회수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12.2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자기자본 17.5억원을 유지 상회할 수 있도록 현행 납입자본금 26억원을 납입자본금 17.5억원으로 자본 8.5억원 감소를 제안하였다. 자본 8.5억원 감소는 다음과 같이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의 의안을 승인 가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승인취득 후 즉시) 자본감소 등기를 완료하도록 대표이사에게 권고하면서 유관기관의 자본감소 승인 신청과 취득기간이 2개월 소요되는 일정 변경성을 감안하여 자본감소의 주요 일정을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 7 호 의안 : 2018년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확정의 건

의장은 위 제2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인 이익배당의 건, 제4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인 자본 감소의 건을 2018년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이사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와 이사회 보고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 시각 17시 4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9년 6월 25일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605호(여의도동,익스콘벤처타워)

의장 겸 대표이사 김 병 국

사내이사 이 한 수

사내이사 이 한 민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405호
(서초동,정곡빌딩 남관)
(전화) (02)-595-2233
(팩스) (02)-595-4466

[별지 제37호서식]

공증인가 法務法人 두 레

등부 2019 년 제 1838호

인 증

위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의

2019년 06월 25일자 이사회 ----------

의사록에 기재된 의장겸대표이사 김병국, 사내이사 이한수, 동 이한민 ----------

등의 대리인 김기연 은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로긎ㅇ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9년 08월 1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 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405호 (서초동,정곡빌딩 남관)

공증담당변호사 김기연

아 래

1. 진술서, 2. 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정관, 5. 인감증명서, 6. 위임장----------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